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37

발의일자 : 2023. 11. 15.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도병두,

고영찬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문구로 정비하여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및 실행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5조)
- 라.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안 제6조 및 제8조)
- 마. 정보격차의 해소 추진(안 제9조)

바. 공무원 및 구민의 지능정보화 관련 교육(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안 제13조 및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11. 16. ~ 2023. 11.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 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 지능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전산실"이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장비가 설치·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1.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 2.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 3.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 4.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총 괄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를 관할하는 국의 국장을 지능정보화책 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등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연계·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지원 대상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 및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능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능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① 구청장은 지역주 민 및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관 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 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능정보화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 행사에 참여한 사람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 장과 소정의 부상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자료백업 및 보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보호)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 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 하고 유·무상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
 - 2. 구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디지털 저장 매체 완전 파기 지원

-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저작권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정) 2000.05.12 조례 제 268호 (일부개정) 2007.10.05 조례 제 507호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 640호

(조례) 2014.11.14 조례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5.10.08 조례 제826호

(일부개정) 2020.09.18 조례 제11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화자료"란 "지식정보자원" 중 행정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를 말한다.
- 2. "정보화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정보화부서"란 금천구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정보화사업을 조정·총괄하는 부서 또는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정보화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디지털행정"이란 서면 및 구두로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컴퓨터 및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 기 위한 행정업무개선과정을 말한다.
- 5. "정보시스템"이란 디지털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을 말한다.
- 6. "정보기술아키텍처(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행
-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 3. 정보격차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금천구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금천구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금천구의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보화정책의 기본 방향
-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수립
- 3. 각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4. 정보화 추진 조직에 관한 사항
- 5. 정보화 추진 절차 및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 6.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 7. 정보통신 신기술 동향 및 행정정보 시스템 적용 방안에 관한 사항
- 8.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주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9.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 10. 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11. 정보통신망 등 정보화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12. 정보화와 관련된 교류 및 국제협력의 활성화
- 1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14.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 보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 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제6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

- ② 구청장은 매년 초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총괄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1. 정책 · 계획 등의 수립 · 추진 시 정보화 계획과 연계 · 조정
- 2.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사전심의 등 총괄조정 및 평가
- 3. 주요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 4.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 5. 정보자원의 획득 · 배분 · 이용 등의 종합조정과 체계적 관리
- 6. 정보화 표준화와 공동 활용 추진
-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총괄부서) 정보화부서 중 정보화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천구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추진하는 부서를 정보화총괄부서로 한다.

제9조(정보화부서) 정보화부서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2. 정보화사업 발굴 및 정책화 추진, 정보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 3.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 시행
- 5. 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 6.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 7.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산실 등 관련시설의 설치·확보, 보 안과 유지관리의 수행

8.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주민생활등 소관업무에 대한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업무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제13조(디지털행정의 추진)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① 구청장은 주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

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정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 시스템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20조(정보화교류) ①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의 공동 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타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정보화에 관한 협력·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수 있다.
 - 1. 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 2. 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지원
 - 3.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 협력
 - 4. 국제기구 신설이나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정보화교류를 추진하는 기관과 정보화 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21조(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화교육은 일반인반, 장애인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

기관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 · 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 여 정보화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보화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 행사에 참가한 사람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소정의 부상 및 기 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 등) 구청장은 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1. 민·산·학·연 등과 협력 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제5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26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확산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 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
-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8조(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0.9.18〉
- 3.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중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6.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 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7.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18〉 [제목개정 2020.9.18]

제29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구축 시 국가기관이 고시하는 웹페이지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제한구역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등 유사시 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료 백업 및 보관

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의 보호)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 2.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 · 공정한 구제조치
-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정보화자료의 관리 및 이용

제34조(전산실과 통합관제운영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U-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를 설립 및 운 영할 수 있다.

제35조(정보화자료 등의 관리) 구청장은 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6조(정보화자료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정보화자료 수수료) ①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수수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다. <개정 2020.9.18>

제38조(평가 및 시상)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개발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정보시스템개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보험) 구청장은 설치된 고가의 정보통신 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산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

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0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부 칙(제826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115호,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 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 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 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